

KOLAS 공인검사기관 폐업 공고 및 통보

(사)한국시설물안전관리단 대표 귀하

1. 귀 기관의 KOLAS 공인검사기관 폐업 신고 관련입니다.
2. 위와 관련하여 「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규칙 제10조(휴업폐업사실의 통지 등) 및 「KOLAS 공인기관 인정제도 운영요령」 제16조(휴업폐업 사실의 통지)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인검사기관 업무 폐지를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.
3. 아울러 폐지 공고일 이후에는 KOLAS 인정마크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. 폐업(폐지) 공고문 1부.

2021년 08월 04일

한국인정기구장

